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06년 1월 19일
발 의 자 : 박지위 위원회 1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사기를 고양하고 근무능률을 증진케 함으로써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구의회사무국·보건소·동사무소 소속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휴직중인 공무원(단, 질병·육아·가사휴직 제외)·국외 파견중인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안 제3조)
- 나.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함.(안 제5조)
- 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편의시설, 보건·체력단련시설,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 할 수 있음.(안 제6조)
- 마.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직·퇴직공무원, 우수·효행공무원 격려 등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체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위원회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함.(안 제8조)

사. 구청장은 선택적복지 제도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8841호)

나. 예산조치 : 2006년 예산편성 되었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구의회사무국·보건소·동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 2.“후생복지제도”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 3.“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 ③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후생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 편의시설, 보건·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순직공무원, 우수효행공무원의 격려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6명 이내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2인 이내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인 이내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후생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